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5월 19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5월 11일

나.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년 5월 13일

라. 상정일자 :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0. 5. 19.)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세무1과장 서선옥)

□ 제안이유

코로나19 관련 해외 출입국제한 확대와 운항중단 등으로 항공업계의 가중되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재정적 손실이 큰 항공업계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항공기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항공기 재산세 세율

1천분의 3을 강서구 구세 조례로 1천분의 2.5로 조정하여 항공기 재산세 부담을 완화 조항 신설(안 제10조)

나. 제10조 신설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세기본법」 제111조, 「항공사업법」 제2조

나. 예산조치: 2020년 감면세액 2,471백만원 반영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 3. 27. ~ 4. 16.)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 사전심사 결과(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가족정책과) : 해당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배금택)

○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재해로 인한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 및 여행산업 불황 등의 여파로 재정적 손실이 큰 항공운송업계에 대해 항공기 재산세율을 인하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재해 등의 발생으로 항공운송

업계의 항공기 재산세 세율을 과세표준의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2.5로 인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안 제10조)

- 적용시한을 2020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 현재 1천분의 3인 항공기 재산세 표준세율을 1천분의 2.5로 0.5% 인하하고 그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으로
- 지방세법 111조 제3항에 따라 재해로 인한 탄력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비용추계 상 24억 7,100만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 탄력세율을 적용한 본 구세 감면 개정안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세감면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측면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붙임 관계법령 1부.

참고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7. "항공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15.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사진촬영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